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아시아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 후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u> <u>아니하며</u>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요약정보> | 투자위험등급 산전기준 변경 및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베어링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어링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 업데이트 | (생략) | 연혁 추가 |
|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제 2 부.10.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 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투자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 이 투자신탁은 설정된 후 3 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설정 후 3 년 경과 이후 결산일 도래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5.28%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으로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5.28%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 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250)를 곱해 산출합니다. |

| | | -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생략) | ※ 추후에도 매 결산 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 1 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 2 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 3 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 4 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 5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 6 등급 보통 위험: 1% 이하 (이하 현행과 같음) |
|---|-----------------------|---|---|
| 제 2 부.11.나.환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 | (추가) |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
|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제 2 부.14.나.과세 제 3 부.집합투자기 | 소득세법 개정 반영 결산 업데이트 |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구의 재무 및 | | | 202/10-2 10 20 1- |

|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 |
|------------------|----------------|------|------------------------|
| 제 4 부.1.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ttr/18 | | | 라. 운용자산규모 |
|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아시아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요약정보> | 투자위험등급 산전기준 변경 및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베어링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어링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공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 업데이트 | (생략) | 연혁 추가 |
|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제 2 부.10.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 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생략] 투자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략) ※ 이 투자신탁은 설정된 후 3 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설정 후 3 년 경과 이후 결산일 도래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6.56%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으로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36.56%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 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250)를 곱해 산출합니다. ※ 추후에도 매 결산 시 마다 변동성을 |

| | | -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생략) |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기준) 1 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 2 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 3 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 4 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 |
|---|-----------------------|---|---|
| | | | 5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 6 등급 보통 위험: 1% 이하 (이하 현행과 같음) |
| 제 2 부.11.나.환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영 | (추가) |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
|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제 2 부.14.나.과세 | 소득세법 개정 반영 | (생략)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이하 현행과 같음) |
| 제 3 부.집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 |
|------------------|----------------|------|------------------------|
| 제 4 부.1.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tt^v | | | 라. 운용자산규모 |
|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아시아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u> |
| |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 <u>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 |
| | | 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 | 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
| | | 평양 지역(일본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 |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 |
| 투자위험등급 | | 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 |
| | | 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 | 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 |
| | | 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 | 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 |
| | | 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다. | |
| 투자비용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및 동종유형 총보수 |
| | |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 투자실적 추이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
| (연평균 수익률)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운용전문 인력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
| | | | 및 운용 경력년수 |
|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아시아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u>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u> |
| |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 <u>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 |
| | | 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 | 구 재산의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
| | | 평양 지역(일본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 | 제외)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 |
| 투자위험등급 | | 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 |
| | | 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 | 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 |
| | | 품 투자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 | 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 |
| | | 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다. | |
| 투자비용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및 동종유형 총보수 |
| | | | |
| | |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 투자실적 추이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
| (연평균 수익률)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운용전문 인력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
| | | | 및 운용 경력년수 |
|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법 개정 반영

|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u> <u>아니하며</u>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요약정보>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 업데이트 | (생략) | 연혁 추가 |
|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제 2 부.10.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 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 | |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
|--|-----------------------------------|---|--|
|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투자위 험등급 산정기준 개정 변경 | (생략)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50%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u>일간</u>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29.21%로 이 투자신탁은 6 단계 등급 체계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 | | (생략)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됩니다 |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u>일간</u>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으로 계산됩니다. |
| | |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5.50%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이 투자신탁의 실제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29.21%</u>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 | ※ <u>실제 수익률</u>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 년간 펀드의 <u>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u> 바탕으로 <u>합니다.</u> |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분포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250)를 곱해 산출합니다. |
| | | (생략) | (현행과 같음) |

| | | | -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
|-------------------------------------|-------------------------|-----------------------------|---|
| | | -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 <u>(97.5% VaR 모형 기준)</u> |
| | |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 <u>1 등급 매우높은 위험: 50% 초과</u> |
| | | <u>1 등급 매우높은 위험: 25% 초과</u> | <u>2 등급 높은 위험: 50% 이하</u> |
| | | <u>2 등급 높은 위험: 25% 이하</u> | <u>3 등급 다소높은 위험: 30% 이하</u> |
| | | <u>3 등급 다소높은 위험: 15% 이하</u> | <u>4 등급 보통 위험: 20% 이하</u> |
| | | <u>4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 <u>5 등급 보통 위험: 10% 이하</u> |
| | | <u>5 등급 보통 위험: 5% 이하</u> | <u>6 등급 보통 위험: 1% 이하</u> |
| | | <u>6 등급 보통 위험: 0.5% 이하</u> | |
| | | | (현행과 같음) |
| | | (생략) |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
| | |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및 사유 | 변경전 위험등급 : 2 등급 |
| | | (추가) | 변경후 위험등급 : 3 등급 |
| | | | <u>위험등급 변경사유 :</u>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
| 제 2 부.11.나.환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 | (추가) |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
| 세 2 구.11. 다.완배 | 기업중시시작 작성기군 개성 반 영 | | 기 무자신틱는 무자기산 중 환배가 가능한 기방형 투자신탁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
| | ľ | |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 | 50 N.M. O |
| | | | 환매불가: X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X |
| | | | 환매가능, 환매수수료 미발생: O |
| 제 2 부.13.나.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집합투자기구에 | | | |
|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 |
| 제 3 부.집합투자기 | 결산 업데이트 | (생략)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구의 재무 및 | | | |
| 운용실적 등에 관한 | | | |
| 사항 | 권사이 기즈 네이 사람시트 | (생략) | 다 최고 0 제 사이에도 스아 레모네ㅇ |
| 제 4 부. 1 . 집합투자업자에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g 年 <i>)</i>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 관한 사항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 | | 라. 운용자산규모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
|------------------|--|------------------|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

|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투자위험등급 | 투자위험등급 변경 | 6 단계 등급 체계중 2 등급(높은위험) | 6 단계 등급 체계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 |
| 투자위험등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 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u> 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발행회사의 부도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비용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 운용전문 인력 |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 생략 |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
| | | | 및 운용 경력년수 |
| | | |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